



- 1 실업 보험 기금 및 기타 지침 문서에 따른 COVID-19의 영향을 받은 직원 및 고용주를 지원하는 정책에 관한 결의안 116/NQ-CP
- 2 전자 인보이스에 대한시행령 No. 123/2020/ND-CP에 따른 시행규칙 78/2021/TT-BTC 안내
- **3** Covid-19 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2021년 토지 임대료 인하에 대한 결정 27/2021/QD-TTg
- 4 납세 연장에 관한 공문 No. 3419/TCT-CS
- 5 증여 소득에 대한 개인 소득세(PIT) 정책에 관한 공식 서신 34268/CTHN-TTHT
- 6 공식 서신 4065/TCHQ-TXNK는 가공 상품에 대한 세금 정책을 안내하지만 제조 또는 가공 시설이 없습니다
- 7 EPE 사무실 건설을 위해 수입된 상품에 대한 공식 서신 번호 4199/TCHQ-TXNK

# 1. 실업 보험 기금 및 기타 지침 문서에 따른 Covid-19의 영향을 받은 직원 및 고용주를 지원하는 정책에 관한 결의안 116/NQ-CP

2021년 9월 24일, 정부는 실업 보험 기금문서에 따라 COVID-19 의 영향을 받는 직원과 고용주를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결의안 116/NQ-CP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코로나19가 근로자의 삶과 기업의 생산 및 비즈니스 활동의 여러 측면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또한 이 결의안의 시행을 안내하기 위해 결정 28/2021/QD-TTg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정적 지원:

- 실업보험기금 잔액에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기준으로 지원한도에서 차감하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지원하되 아직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한함.
- 신청대상:
  - 2021년 9월 30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국가기관, 정치단체, 사회정치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제외)
  -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노동 계약이 종료되어 실업 보험 가입이 중단된 직원의 경우, 연금 수급자를 제외하고, 보장된 실업 보험 지급 기간이 있음
- 지원 수준: 실업 보험 미청구 개월 수에 따라 VND1,800,000/인에서 VND3,300,000/인까지.
- 시행 기간: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실업 보험 기금에 대한 납부액 감액

- 적용 대상: 2021년 10월 1일 이전에 실업 보험에 가입한 고용주(국가 기관, 정치 단체, 사회 정치 단체, 인민 군대 및 국가 예산으로 반복 지출이 보장되는 공공 비사업 단위 제외).
- **감면 수준:** 고용주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월 급여 기금의 1%에서 0%까지 기여율을 감액할 수 있음.
- 축소 기간: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현재 베트남 사회 보장국은 위 정책의 구체적인 시행을 안내하기 위해 2021년 10월 1일자 공식 서신 번호 3068/BHXH-CSXH를 발행했습니다. 사업체는 구체적인 지침을 위해 직접 관리하는 보험당국에 문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2. 전자 인보이스에 대한시행령 No. 123/2020/ND-CP에 따른 시행규칙 78/2021/TT-BTC 안내

2021년 9월 17일, 재무부는 2019년 6월 13일자 조세행정법의 조항 및 2020년 10월 19일자 시행령 No. 123/2020/ND-CP의 시행을 안내하는 78/2021/TT-BTC를 발표했습니다. Circular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항이 있습니다:

- 정보 기술 인프라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 조직 및 개인이 2022년 7월 1일 이전에 시행령 78/2021/TT-BTC 및 시행령 123/2020/ND-CP의 지침에 따라 전자 송장 및 문서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권장합니다.
- 기업, 경제 조직 또는 기타 조직인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전자 인보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전자 인보이스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전자 인보이스 인증에 대한 새로운 규정 - 상품 및 서비스 판매에 대한 승인은 이름, 주소, 세금 코드와 같은 일부 필수 정보와 함께 승인 당사자와 승인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승인 목적; 승인 기간; 승인된 송장 지불 방법.

당사자는 전자 인보이스를 사용하기 위해 등록할 때 세무 당국에 통지하고 인보이스 승인을 공개해야 합니다.

- 세무 당국에 보낸 전자 인보이스가 오류가 난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세무당국의 코드를 재발급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조정 또는 교체의 형태로 처리해야 합니다:
  - 판매자는 각 송장 또는 오류가 있는 여러 전자 송장에 대한 조정을 통지하고 앞서 언급한 조정된 전자 송장이 발생한 VAT 신고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세무 당국에 통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 판매자가 법률에 따라 서비스 제공 전 또는 제공 중에 금액을 수금할 때 청구서를 발행한 후 서비스 제공이 취소 또는 해지된 경우 판매자는 발행된 전자 청구서를 취소하고 세무 당국에 통지해야 합니다;
- 규정에 따라 전자 인보이스가 인보이스 모델 번호, 인보이스 기호 없이 작성되거나 인보이스 번호가 잘못된 경우 판매자는 조정만 할 수 있으며 취소 또는 교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인보이스의 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 실제 조정에 따라 증가(양수 부호) 또는 감소(음수 부호)하여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 3. Covid-19 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2021년 토지 임대료 인하에 대한 결정 27/2021/QD-TTg

2021년 9월 25일 총리는 Covid-19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2021년 토지 임대료 인하에 관한 결정 27/2021/QD-TTg를 발표했으며 구체적인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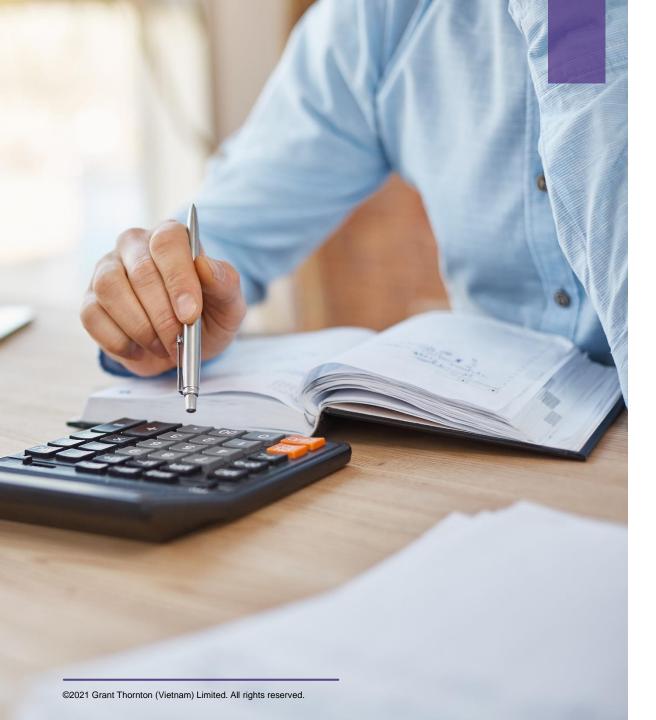
- 대상: 임대인이 토지 임대료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여 연간 토지 임대료 지불의 형태로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의 결정 또는 계약에 따라 국가로부터 토지를 직접 임대하는 조직, 단위, 기업, 가구 및 개인 면제 또는 감면, 임차인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임대료 감면을 받는 경우.
- **감면 수준:** 2021년에 지불해야 할 토지 임대료의 30% 감소 및 2021년 이전 연도의 미지급 토지 임대료 및 연체 이자(있는 경우)에 대한 감면 없음. 토지임차인이 법률에 따라 토지임대료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후 납부하여야 할 토지임대료에 대하여 토지임대료의 30%를 감액하여 산정함.

### - 제출서류:

- 2021년 토지 임차인의 토지 임차료 인하 요청은 결정문과 함께 발행된 부록의 양식에 따라 이루어짐.
- 관할 당국의 토지 임대 결정서 또는 토지 임대 계약서 사본.



결정은 서명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 말까지 유효합니다. 신청서가 2022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제출되는 경우, 토지 임대료는 이 결정에 따라 감소되지 않습니다.



## 4. 납세 연장에 관한 공문 No. 3419/TCT-CS

Covid-19종료 후 납세 연장 정책에 대한 세무국의 공식 서신 No. 3419/TCT-CS (2021년 9월 13일자)에 따라, 국세청은 납세 연장이 다음 2가지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고 답변했다:

- Covid-19 전염병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2021년 VAT, CIT, PIT 및 토지 임대료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기업은 정부에서 발표한 2021년 4월 19일자 시행령 52/2021/ND-CP를 준수해야 합니다.
- 시행령 52/2021/ND-CP에 따른 납세 연장 기간 종료 시 세무 관리법 No. 38/2019/QH14에 따른 납세 연장 대상인 경우 기업은 연장 요청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납세의무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기업을 직접 관리하는 세무 당국에 보내 대가 및 정산을 받습니다.
- 국세청도 권장 사항을 인정하고 제안된 아이디어를 계속 평가하고 연구하여 지원 정책의 공표를 위해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할 것입니다.

# 5. 증여 소득에 대한 개인 소득세(PIT) 정책에 관한 공식 서신 34268/CTHN-TTHT

2021년 9월 8일에 발행된 하노이 세무부의 공식 서신 번호 34268/CTHN-TTHT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항이 있습니다:



- 회사가 직원에게 Circular 111/2013/TT-BTC의 2조 10항에 명시된 선물 수령 소득의 일부가 아닌 현물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증권, 경제 조직, 사업체 자본, 부동산 포함) ; 주 기관에 소유권 등록 또는 사용 권한이 적용되는 기타 자산)은 이러한 선물에 대해 PIT를 신고하고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 회사가 직원에게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
- 지급내용에 개인의 성명이 명확히 기재되거나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 지급액에 개인 수혜자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직원 간에 공유되는 경우 이 소득은 PIT 과세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6. 공식 서신 4065/TCHQ-TXNK는 가공 상품에 대한 세금 정책을 안내하지만 제조 또는 가공 시설이 없습니다

2021년 8월 17일, 관세청은 가공을 위해 수입되지만 제조 또는 가공 시설이 없는 상품에 대한 세금 정책을 안내하는 공식 서신 번호 4065/TCHQ-TXNK를 발행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시행령 제134/2016/ND-CP 시행령 제1조 제4항의 개정 및 보완에 따른 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18/2021/ND-CP(납세자는 베트남 영토 내에서 수출 가공 시설과 기계 및 장비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외국 무역업자를 위해 가공을 위해 수입된 상품은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시행령 134를 개정하는 시행령 제18호에 제조 외주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관당국은 가공에 참여하는 기업이 생산시설을 갖추지 않고 전체 가공활동을 외주로 하는 경우에는 면세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 7. EPE 사무실 건설을 위해 수입된 상품에 대한 공식 서신 번호 4199/TCHQ-TXNK





2021년 8월 27일, 세관 총국은 비관세 구역 기업의 입찰 결과에 따라 해외에서 수입한 계약자가 공장, 사무실을 건설하고 장비를 설치하는 시행을 안내했습니다:

- 수입관세: 주계약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입찰패키지 이행에 참여하기 위해 해외에서 베트남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하도급업체인 국내기업(주계약자는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는 국내기업) 투자자(비관세 지역 기업)와 함께 비관세 지역 기업의 입찰 결과에 따라 공장, 사무실을 건설하고 장비를 설치하려면 규정에 따라 수입 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VAT: 해외에서 베트남으로 상품을 수입하는 국내 기업 계약자는 규정에 따라 VAT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Contact

고객님께서 회계, 세무, 이전가격, 투자활동, 관세, 노동법 및 기타 경영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저희 Grant Thornton 팀에게 연락해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뉴스레터를 다운로드 하고 싶으신 경우, 우측 링크를 통하여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Tax Hub

#### **Head Office in Hanoi**

18<sup>th</sup> Floor, Hoa Binh International Office Building 106 Hoang Quoc Viet Street, Cau Giay District, Hanoi, Vietnam **T** + 84 24 3850 1686

**F** + 84 24 3850 1688

grantthornton.com.vn

#### **Hoang Khoi**

National Head of Tax Services **D** +84 24 3850 1618 **E** khoi.hoang@vn.gt.com

### 권 혁 준 (Kwon Huyck Jun)

Director – Korean Desk D +84 24 3850 1679 E hyuckjun.kwon@vn.gt.com

### **Bui Kim Ngan**

Tax Director
D +84 24 3850 1716
E ngan.bui@vn.gt.com

#### 김민제 (Kim Minje)

Senior Manager – Korean Desk **D** +84 379 591 011 **E** minje.kim@vn.gt.com

#### Nguyen Dinh Du

Tax Partner
D +84 24 3850 1620
E du.nguyen@vn.gt.com

#### Vishwa Sharan

Director – Transfer Pricing
D +84 327 345 053
E Vishwa.Sharan@vn.gt.com

#### **Hoang Viet Dung**

Director - Tax and Transfer Pricing Services
D +84 24 3850 1687
E dung.hoang@vn.gt.com

#### **Ho Chi Minh City Office**

14<sup>th</sup> Floor, Pearl Plaza, 561A Dien Bien Phu Street Binh Thanh District, Ho Chi Minh City, Vietnam **T** + 84 28 3910 9100

F + 84 28 3910 9101

### Valerie – Teo Liang Tuan

Tax Partner **D** +84 28 3910 9235 **E** valerie.teo@vn.gt.com

#### Tran Nguyen Mong Van

Tax Director
D +84 28 3910 9233
E mongvan.tran@vn.gt.com

#### Lac Boi Tho

Tax Director **D** +84 28 3910 9240 **E** tho.lac@vn.gt.com

#### **Nguyen Thu Phuong**

Tax Director

**D** +84 28 3910 9237 **E** thuphuong.nguyen@vn.gt.com

© 2021 Grant Thornton (Vietnam) Limited - All rights reserved.

'Grant Thornton' refers to the brand under which the Grant Thornton member firms provide assurance, tax and advisory services to their clients and/or refers to one or more member firms, as the context requires. Grant Thornton International Ltd (GTIL) and the member firms are not a worldwide partnership. GTIL and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Services are delivered by the member firms. GTI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GTIL and its member firms are not agents of, and do not obligate, one another are not liable for one another's acts or omissions.

